

[] 제조업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 사용업 허가신청서
[] 보관·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소유 [] 위탁 [] 임차		
	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⑩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⑪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m ³	
	⑫ 종업원 수	명	⑬ 사업장 면적 m ²	
	⑭ 보관·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m ³	⑮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m ³
	⑯ 매출액(사업장)		억원	
	⑰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용량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명칭	(톤, m ³ , m ²)	
	⑱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⑲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 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 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p>수수료</p> <p>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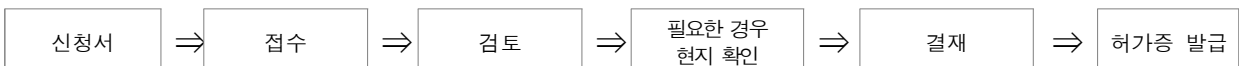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⑪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4. ⑫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5. ⑬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7. ⑮란 및 ⑯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8. ⑳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